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보고서

2015. 5. 14.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5.11. 서종수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15.5.11.
- 다. 상정일자 : 제19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5.5.14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,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
- 마포구의회에서는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

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.

- 이에 사전·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, 마포구의회 의원들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) 위원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 부터 6개월로 한다.
- 3)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## 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1일 서종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임.

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은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구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,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정립과 의원으로써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전·예방적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